

#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열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8월22일  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생환, 김재형, 김화숙  
김희걸, 박순규, 신정호  
이경선, 임종국, 전석기  
정진술, 최선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도로(차도, 보도)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도블록 파손, 포토홀 등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 운영중인 도로시설물·도로부속시설물 신고 포상금에 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도로를 포함시키고자 함. (안 제48조 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본문 중 “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”을 “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”로, “고장”을 “고장·파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

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</b> <u>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·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<b>고장</b>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b>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</b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〈<u>신설</u>〉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</b> <u>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 고장·파손, 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--</u>. 다만,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8에서 기존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시설물을 “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” 에서 “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” 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  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기존에 운영 중인 자원봉사 형식의 ‘거리모니터링단’ 과 ‘우수 차도모니터 요원’ 제도는 본 조례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어, 이번 개정안에서 단서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경우 별도로 포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비용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현행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은 매우 경미하지만 지급 사례가 있음 (최근 지급 사례[도로 제외] : ’ 14년 1건 5만원, ’ 16년 1건 3만원)
- 향후 포상금 지급 대상 시설물에 도로가 추가되면 일반 시민의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건수나 포상 평균 금액의 추정은 곤란한 상황임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황훈

예산분석관 한기백

☎ 02-3705-1284

e-mail : hophan@seoul.go.kr